

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12] <개정 2020. 3. 10.>

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(제17조의2관련)

구 분	지 급 대 상
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(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) ·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(과장급) · 과장 · 담당관 · 사업소장 · 출장소장 또는 읍 · 면 · 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
연구직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
지도직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
교육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, 대학원장, 대학교의 학장 · 처장 · 기획연구실장 · 교양과정부장 나.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. 교육장 및 시 ·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.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· 교육연구관